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・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0. (생략) <신설> ④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0. (현행과 같음) 11. Ce클래스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0. (생략) <신설> ②~⑤ (생략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0. (현행과 같음) 11. Ce클래스 수익증권 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・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0.(생략) <신설>	제40조(보수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10.(현행과 같음) 11. Ce클래스 수익증권

	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